



벤처기업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벤처기업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동법 제14조제2호”를 “산업발전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제2호”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을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회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관한 산업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8의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립기술품질원
2.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기타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제1항중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출자계획
 2. 수익금배분 및 손실금충당계획
- ②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8. 소득 또는 자본금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자산의 관리·운영

2. 출자증서의 발행·교부

3.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위탁 등)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출자자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출자자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손실금충당 등) ①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금은 당초의 출자금 총액에서 조합출자자에게 배분하였거나 배분하기로

확정된 이익금총액과 해산당시에 평가된 출자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중 “범위등”을 출자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10억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3년이내”를 각각 “7년이내”로, “양도 또는 회수”를 “회수 또는 양도”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으로, “동항제5호”를 동항제6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3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으로, “10억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를 “당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개인투자조합”을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개인투자조합”을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업무집행조합에게”를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원에게”로, “업무집행조합원은”을 “당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제11조의3(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가격과 시가의 산정방법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③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④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⑤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⑥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⑦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하여 정관 기타 내부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한 경우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특별결의를 한 경우
 3.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11조의4(실험실공장의 설치 등)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제15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제2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제17조제5호중 “전문위원회”를 “벤처기업정책협의회”로 하고, 동조제6호중 “별표 73호”를 “별표 1 제73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전문위원회”를 “벤처기업정책협의회”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와 제15조 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를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문위원회”를 “벤처기업정책협의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

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제19조제2항 본문중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한다.

별표 1 제20호·제26호·제37호·제38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73호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을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정(1999. 1. 21. 공포, 법률

제566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 (1)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대상기관에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함.
- (2)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삭제토록 함.
-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도로건설사업 등과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재활용시설, 유통단지, 국제회의시설 건설사업 등에 정보화계획을 반영토록 함.
- (4)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안내서비스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 기관별·분야별 연계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함.
- (5)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행정업무처리와 대민서비

스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여 공공기관간공동활용토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공동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하며, 공공기관이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별도의 자료제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6)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이용확산에 대응하여 인터넷 주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동 업무를 담당토록 함.
- (7)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벤처기업전용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아파트형 공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소프트웨어지원센터등을 설치·운영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실시토록 함.

나.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1) 정보자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 동 설비 및 기술의 개발·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및 소요자금으로 정함.
- (2) 각 부처간 정보화사업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추진을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의 공무원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추가